

광명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

제정	1993.	7. 16	조례 제 772호
개정	1994.	1. 10	조례 제 811호
	1996.	8. 7	조례 제 944호(행정기구설치조례)
	1997.	7. 9	조례 제1043호
	1998.	9. 23	조례 제1088호(행정기구설치조례)
	2001.	7. 26	조례 제1255호(행정기구설치조례)
	2003.	11. 18	조례 제1323호(행정기구설치조례)
	2006.	5. 22	조례 제1437호(제명개정)
	2008.	6. 16	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일부개정	2010.	3. 26	조례 제1714호
일부개정	2011.	8. 9	조례 제1786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8.	7. 31	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광명시 청소년 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97. 7. 9, 2006. 5. 22, 2008. 6. 16>
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필요시 구성·운영한다. <개정 2010. 3. 26>
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.

③ 위원은 시교육장 및 경찰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외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, 청소년단체, 언론계, 학계, 종교계, 체육계, 문화예술계, 사회단체의 대표,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제3조(운영) ① 위원회는 지방청소년 육성시책을 총괄하며,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 단체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한다.

② 위원회가 청소년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(교육청, 경찰서, 노동부 지방사무소, 농촌지도소등)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연 2회이상 개최한다.

④ 위원회는 중앙 및 경기도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

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 및 도지방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 건전육성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. <개정 2006. 5. 22>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
2.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
3. 청소년수련시설(이하 “수련시설”이라 한다)의 설치·관리 및 지원
4. 청소년 단체의 육성·지원
5.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

제5조(임기) 위원회는 해당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, 위원은 해당 기간을 임기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3. 26]

제6조(위원장의 직무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8. 7. 31>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 및 의사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. <개정 97. 7. 9>

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 <개정 96. 8. 7, 98. 9. 23, 2001. 7. 26, 2003. 11. 18, 2006. 5. 22>

제9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6. 5. 22, 2008. 6. 16, 2011. 8. 9, 2018. 7. 31>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

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<개정 97. 7. 9>

제11조 삭제 <97. 7. 9>

부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조례폐지) 조례 제579호 광명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<1994. 1. 1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. 8. 7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1997. 7. 9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. 9. 23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1. 7. 26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3. 11. 18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6. 5. 22 조례 제143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3. 26 조례 제1714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
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만료 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11. 8. 9 조례 제1786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⑥3 까지 생략

⑥4 광명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”를 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
조례”로 한다.

⑥5 부터 ⑦1 까지 생략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